

속초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

번호

151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일부조항이 동일조항이면서도 시군간의 통일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업종별 업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정부보호육성사업인 고아원, 탁아소를 공공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
- 현행 영업2종의 업태별 구분 세분하여 명문화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————— 천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8 ~ '93. 4. 28
-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수도급수조례증정정조례안

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3] 업종구분표중 영업2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공공공란의 "교아원, 탁아소"를 가정용으로 하며 "화원"을 "공공도서관"으로 한다.

영업2	① 신물절객업 ② 공연장 ③ 숙박업(보안숙 제외) ④ 우기장, 노력방 ⑤ 백화점, 드매센타, 대규모소매점 ⑥ 자동차정비업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, 운송기관영업 ⑦ 의식장 ⑧ 사설학원 ⑨ 사진현상소 ⑩ 양조장 ⑪ 의약품, 화장품, 화장품제조업 ⑫ 체육시설업(체육도장업, 탁구장업 제외) ⑬ 관서급수를 목적으로 일시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; 입주전까지, 음압급수의 경우에는 회중단체 요율전용) ⑭ 볼트 급수전에 의한 전판용 급수 ⑮ 수도관 파수에 의한 누수 ⑯ 제빙, 냉동, 냉장업 ⑰ 불력제조업 ⑱ 골질 원예프함 ⑲ 창고업 ⑳ 수족관 ㉑ 골드장 ㉒ 세련소 ㉓ 아트앤슬장 ㉔ 금속기관 ㉕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종
-----	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